

〈자주하는 질문〉

Q) '23.1.1에 등록된 대부업자는 작성대상 인가요?

A) '23.1.1 이후 신규 등록된 업자는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Q) '22.12.31 기준으로는 등록 대부업자 명단에서 조회되지만 '23.1.1 이후에 폐업·등록취소한 업자는 작성대상 인가요?

A) 작성대상이 맞습니다.

'22.12.31 기준으로 등록 대부업자로 조회되는 업자는 이후 폐업·등록취소 하였던더라도 모두 작성대상에 해당합니다.

(※ 자료 미제출시 미제출 명단에 포함시켜 제출)

Q) '22.12.27에 서초구청에 전출신청을 해서 '23.1.3에 강남구청으로 변경등록한 대부업자는 어디에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22.12.31 기준으로 서초구청에 등록된 상태이므로 서초구청에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실태조사 보고서 서식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A) 실태조사 보고서 서식은 총 4종으로 구분됩니다.

- ①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용(엑셀파일)
- ②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용(4페이지 한글파일)
- ③ 개인용(3페이지 한글파일)
- ④ 지점용(1페이지 한글파일)

〈자주하는 질문〉

Q) 대부업자마다 4가지 종류 보고서를 모두 작성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대부업자가 해당하는 보고서만 택일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Q) ○○○대부 △△지점인데, 본점이 자산 100억원 이상이면 지점도 자산 100억원 이상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지점에서는 본점 및 지점의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지점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Q) 개인업자라 자산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데,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 개인업자는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개인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Q) ◇◇◇대부(주), ◇◇◇대부중개(주) 라는 상호로 대부와 대부중개를 모두 등록한 대부업자가 있는데, 이 경우 각각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대부와 대부중개를 모두 등록하여 2개의 등록번호가 있는 법인이라도 동일법인인 경우 1개의 법인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대부와 대부중개를 모두 등록한 업자는 1개의 보고서를 작성하되, 등록내용에 '대부 및 대부중개'로 기재하면 됩니다.

Q) 회계감사 전이라 자산이 100억원 이상이 될지, 100억원 미만이 될지 확실하지 않은데,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 회계감사 전인 대부업자의 경우, '22.12말 가결산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실태조사 보고서가 각종 대부업 통계 및 감독·검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신뢰성 있는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 자산이 100억원이 넘기는 하지만, 주유소를 운영하며 취득한 자산이 대부분이고 대부업 영업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용을 작성해야 하나요?

A) 맞습니다. 대부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며 취득한 자산이 100억원 이상이라도 '22.12말 기준으로 자산이 100억원 이상이면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Q) 자산, 부채 등 재무 현황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A) 재무현황은 중요 정보이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①자산’은 ‘②부채 + ③자기자본’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고, ‘③자기자본’과 ‘④납입자본금’은 다른 항목임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참고] 부적정 입력사례 : ①자산, ②부채만 기재하고 나머지 항목은 미기재,
③자기자본이 (-)로 자본잠식임에도 (+)로 기재,
③자기자본과 ④납입자본금에 동일한 금액을 기재

Q) 대부현황 작성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대부현황은 대부업체가 대부이용자에게 직접 대출해 준 현황입니다. 대부잔액은 '22.12말 기준으로 상환 받을 돈의 합계액이며, 재무상태표(B/S) 상 대손충당금 차감 전 대부(대출)잔액을 기재합니다.

연평균 대부금리는 대부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연단위로 작성하며, 대부잔액 기준으로 가중평균을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작성예시) 월 2%로 대출 취급

→ 연평균 대부금리는 24.00%(=2%×12월) → 24.00으로 기재

(작성예시) A, B, C 총 3건의 대출을 보유한 대부업자 가정

대출A : '19.12말 대부잔액 200만원, 연 30%

대출B : '19.12말 대부잔액 300만원, 연 28%

대출C : '19.12말 대부잔액 500만원, 연 20%

$$\begin{aligned} \rightarrow \text{가중평균금리} &= \frac{(A\text{잔액} \times A\text{금리}) + (B\text{잔액} \times B\text{금리}) + (C\text{잔액} \times C\text{금리})}{\text{총 대부잔액}} \\ &= \frac{(200\text{만원} \times 30\%) + (300\text{만원} \times 28\%) + (500\text{만원} \times 20\%)}{(200\text{만원} + 300\text{만원} + 500\text{만원})} = 24.4\% \end{aligned}$$

→ 24.40으로 기재

※ 차입금리도 위와 같이 연간 차입금리로 기재합니다.

Q) 매입채권 현황 작성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매입채권은 제도권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등)이나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① '22.12말(상환후 잔액)과 ② 최초 매입시(상환전 총액)의 매입가격과 액면가격을 각각 기재합니다.

(작성예시) 액면가 150억원(거래자 150명) 채권을 10억원에 매입, 이 중 3억원(거래자 3명 상환완료)을 회수, '22.12.31. 현재 잔여 액면가격은 147억원이고 재무제표상 매입채권 잔액은 7억원이라고 가정

☞ ① '22.12.31. 현재 잔액기준

- 거래자수 : 147명(=150명-3명), 매입가격 : 7억원(='20.6.30. 현재 재무제표상 매입채권 잔액), 액면가격 : 147억원

☞ ② 최초 매입시 기준

- 매입가격 : 10억원, 액면가격 : 150억원, 채권 매입률 : 6.67%(10억원 ÷ 150억원)

〈참고〉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법률적 근거

- 대부업자 등은 업무보고서를 반기별(기준일: 6월 30일 및 12월 31일)로 작성하여 그 기준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시·도지사 등에 제출(대부업법 §12⑨)
 - 시·도지사는 매년 대부업자 등의 영업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행안부 및 금융위에 제출(대부업법 §16)
 - 행안부와 금융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기별로 작성하여 6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대부업법 시행령 §9의2)
- ※ 대부업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6백만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가능(대부업법 시행령 별표3)

<업무보고서 미제출 및 허위제출시 과태료>

(단위: 만원)

구분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법인	600	1,000	2,000
개인	200	500	1,000

법 제12조(검사 등) ⑨ 대부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7조의3(대부업자 등의 보고서 제출) ① 법 제12조 제9항에 따라 대부업자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서를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시·도지사는 수시로 대부업자등의 영업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시·도지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대부업자등의 현황 파악과 제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